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00

발의연월일: 2020. 8. 20.

발 의 자:윤상현ㆍ이주환ㆍ박대수

이명수・홍준표・허종식

구자근 · 김성원 · 윤영석

안병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서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, 대면수업에 비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교시설의 이용도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.

현재 등록금의 면제·감액 사유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. 그러나 등록금은 학생의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만큼, 그 사유에 대하여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등록금의 면제·감액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재 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·감액 사유에 포함하 고,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업 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 1조제10항 신설). 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10항) 중 "설치·운영 및 제9항의행정적·재정적 제재"를 "설치·운영, 제9항의 행정적·재정적 제재 및 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·감액·환급"으로 한다.

- 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·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할 수 있다.
- 1. 학생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
- 2. 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수업 의 질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등록금의 면제·감액이 필요한 사유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등록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은
2020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등록금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	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
원회) ① ~ ⑨ (생 략)	원회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⑩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
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
	<u>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</u>
	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
	록금을 환급할 수 있다.
	1. 학생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
	<u>한 경우</u>
	2. 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	<u>경우</u>
	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	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
	으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
	<u>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	4. 그 밖에 등록금의 면제・감
	액이 필요한 사유로서 교육부
	<u>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
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, 제3	<u> </u>
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<u>설치</u>	<u>설</u>
·운영 및 제9항의 행정적·재	<u>치·운영, 제9항의 행정적·재</u>
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	정적 제재 및 제10항에 따른 등

교육부렁으로 정한다.	록금의 면제·감액·환급